

##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공동격리의 기준과 절차 법제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동격리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근거 마련

【관련 국정과제】 84-5.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개선-코호트 격리 등 과도한 방역조치로부터 인권보호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6일(수) 공동격리(코호트격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격리의 경우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의료인 등이 공동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토록 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격리 여부를 결정한 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 격리의 필요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 격리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2. 공동격리 정의 및 절차

담당 부서 <총괄> -공동격리-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9050)
		담당자	사무관	정병희 (043-719-9074)
담당 부서 <협조> -법제담당-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규 (043-719-7120)
		담당자	사무관	김유리 (043-719-7132)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공동 격리”를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를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동 격리의 절차 등

- 1)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 1)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 3) 2)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1)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및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공동 격리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통보 및 통지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공동 격리”를 “격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공동 격리”를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공동 격리의 절차 등

공동 격리의 절차, 기간 및 자문기구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시설치료를 실시하는 시설의 장”으로 본다.

## 붙임 2

## 공동격리 정의 및 절차

\* 제1급감염병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 대응지침

- ① (정의) 공동격리는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를 법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른 치료 및 격리하는 방법 중 시행령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동일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집단을 공동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기준) 1인 병실 또는 격리실이 부족하여 개별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역학조사 결과 동일한 '감염병환자등' 또는 동일한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시행 가능

### ③ 시행 절차 등 신설

- (시설지정) 시·군·구청장은 공동격리를 시행할 시설\*을 감염병예방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의3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등)

- (보고·통지) 시·군·구는 시도에 사전보고(신설) 및 종료보고(신설)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

\* 사전·종료보고서는 통지서(서식0)로 같음

\*\* 보고·통지 절차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음

- (자문절차) 시·군·구가 공동격리 시행·해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권고함

- (대상자 통지) 시·군·구는 공동격리 시행과 함께 대상자에게는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격리 종료 후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통지서\*\* 발급

\* 시행규칙 제32조 별지서식 22호

\*\* 시행규칙 제32조 별지서식 22의2호 입원·격리 사실확인서로 같음

※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격리가 필요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찾기 어려움. 단, 과학적 근거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의 의견을 들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최소한으로만 시행 가능함